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4533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홍○○
피 고	1. B
	2. 대한민국
	3. ○○시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E생)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2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5. 7. 접수 제39861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등기소 2020. 12. 14. 접수 제9843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시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3060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2. 1. 11.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 ○○시는 그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원인으로 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1. 12. 29.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규약에 정해진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대한민국, ○○시의 위 각 압류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2, 3,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8. 6. 23.자 임시총회에서 D이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20. 11. 16. 그 임기가 종료된 사실, D의 원고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종헌에는 원고의 임원으로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등을 두고(제6조 제1항),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제8조 제3항)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대표기관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구 대표자로 하여금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비법인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 당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D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대표자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그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원고의 종헌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대표자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후임 대표자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고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점, 이 사건 소송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D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의 적법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대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목록

1. ○○시 F 대 52㎡

2. ○○시 G 도로 73㎡ 끝.